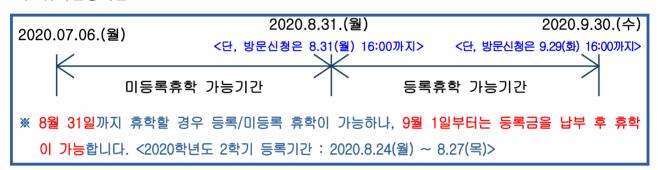
# 2020-2학기 휴학·복학·재입학 신청 안내

- 휴학·복학 승인 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- 신상정보변경: (현거주지, 집, 본인휴대폰, 보호자휴대폰 등)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저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관련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현재 정보로 수정바랍니다.
- 변경방법 :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학사정보 → 학적관리 → 기본학적 → 신상정보 → 정보 변경 후 저장

# 1 휴학 신청 안내

## 가. 휴학신청기간



#### 나.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

구분	등록금대체 가능기간	참고사항	신청 방법	준비물
일반 휴학	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	* 미등록 휴학 희망 시 학기종료일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<단, 방문신청은 8.31(월) 16:00까지>	웹정보 시스템	휴학원서 제출생략 (인터넷 신청)
입대 휴학	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	*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 휴학 희망 시 <u>8월 31일</u> (월)까지<단, 방문신청은 8월 31일 16:00까지>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(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) *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	웹정보 시스템	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(주민센터 발급)
질병 휴학	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	*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*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		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
육아 휴학	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	*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방문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		병·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등록금 포기 휴학	-	│ 성적은 인정말을 수 없음 │ 방문 │		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
창업 휴학	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	* 창업지원단 "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" 승인을 받아 인정함 [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문의] 방문 창업관련서류		창업관련서류

#### 다. 유의사항

- 1) 재학생이 2020학년도 2학기 <u>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</u>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됩니다. <u>미등록 휴학 시에는 교내</u> 장학금은 취소처리 되며, 복학 학기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  - 위의 학생이 등록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에는, 등록기간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대리 휴학신청 가능합니다.
- 2) 재학생이 2020학년도 2학기 <u>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</u>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.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추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.
  - <u>미등록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취소처리 되지만, 복학 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신청이</u> 가능하며, 복학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재산정하여 선발합니다.
- 3)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3년, 횟수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입대휴학,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, 창업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4)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학기(조기)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교과목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엇학기(조기)복학 시 해당 학과로 확인 후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5)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엔 미복학제적 처리되며,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.(휴학연한 및 횟수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)
- 6) 휴학 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오니,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을 하신 후 휴학신 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(휴학 번복 절대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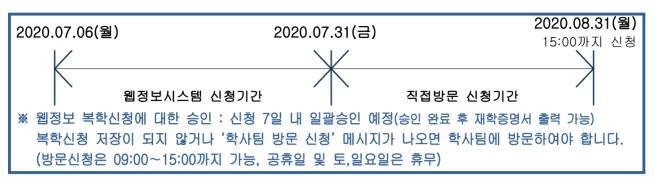
#### 라. 휴학신청 방법





# 2 복학 신청 안내

### 가. 복학신청기간



### 나. 복학 종류 및 참고사항

구분	신청 방법	참고사항
(일반/입대/질병/육아휴학) 복학	온라인 또는 방문	*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함  * 복학확인: 웹정보시스템/학사정보/학적관리/학적변동신청 확인 필  * 입대휴학 후 복학  ① 전역자(개강전 전역예정자 해당):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  ② 전역예정자(개강 후 전역예정자 해당))  - 학기개시일 1개월 이내 군전역예정자로서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가능자 → 제출서류: 전역예정증명서(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)  -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 일부터 수업가능자 → 제출서류: 전역예정증명서(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), 소속 부대장 취학승인 확인서  ③ 제출방법: 방문제출 또는 팩스송부(학번기재)→ 학사팀에서 복학처리함
엇학기(조기)복학	온라인	* 학기 관계없이 본인이 이수한 최종학기에 이어 복학 가능하되, 학과(전공) 운영상 엇학기(조기)복학을 불허할 수 있음 ※ 엇학기(조기) 복학 제한 대학/학과 : 치과대학 치의학과, 치의예과, 의과대학 의학과, 의예과, 간호대학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약학대학 약학과, 사범대학, 공과대학, 예술대학 생활음악과(학과 상담 후 복학신청이 가능함)
<b>하반복학</b> 병		*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및 등록을 포기하고 재등록·수강을 위해 신청함(순차적용) *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여 학사팀 방문 신청
<b>귀향조치복학</b> 방		* 입대휴학 중 학기 개시일 1개월 이전에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복학신청을 할 수 있음

#### 다. 복학생 등록금 납부

- 1)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한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2) 직접방문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는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.
  - ※ 등록기간(재학생과 동일): 2020.8.24(월)~ 8.27(목)

#### 라. 복학생 수강신청

- 1) 수강신청(재학생과 동일) 죽전 : 1차 8.17(월), 2차 8.20(목) / 천안 : 1차 8.18(화), 2차 8.21(금)
- 2) 수강신청정정(재학생과 동일) 죽전/천안 : 9.7(월) ~ 9.8(화)
- 3)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마. 복학신청방법



#### 바. 전부(과)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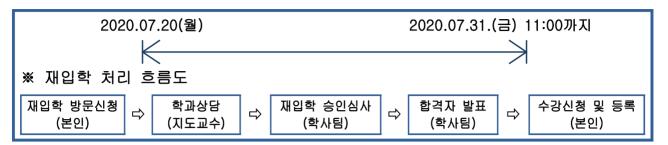
- 1) 학적상태가 '휴학'인 경우 복학신청 접수정보가 있는 경우만 전부(과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) 전부(과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포털(학사공지) 전부(과)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.(추후 공지 예정)

# 사. 학문단위조정에 따른 통폐합 학과 학생 복학 안내

- 1)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모집 중단된 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관련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팀으로 상담신청(전화 또는 방문)을 하셔야 합니다.
- 2)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모집 중단된 학과로 복학하는 학생 중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년편제와 관계없이 캠퍼스 내 타 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, 복학신청 기간 내에 소속캠퍼스 학 사팀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.(단, 사범대학, 음악·예술대학, 국제학부, 의과대학, 치과대학, 약학대학, 간호대학, 해병대군사학과, 임상병리학과, 물리치료학과, 보건행정학과, 치위생학과, 생활음악과(뉴뮤직과), 국제스포츠학부(국제스포츠전공, 태권도전공) 학문단위 조정학과로의 전입은 제한됨)

# 3 재입학 신청 안내

#### 가. 재입학신청기간



### 나. 재입학 신청

1) 신청자격 : 학칙 제13조(재입학 자격) 참고

#### 학칙

제13조(재입학 자격)

- ① 재입학은 해당 학부·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('13.8.1., '14.12.26. 개정).
- 1.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, 1회에 한한다. 다만,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여야 하며, 2회에 한 한다.('14.12.26. 신설)
- 2. 미복학,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,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('14.12.26. 신설).
- 2) 신청기간 : 2020.7.20(월) ~ 7.31(금) 09:00~11:00
- 3) 신청장소 : 소속캠퍼스 학사팀 (죽전 : 범정관117호, 천안 : 도서관 학사행정센터 003-01호) ※ 재입학 신청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**보호자 도장을 지참**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.

#### 다. 재입학 합격여부 확인

- 1) 합격자 발표 : 2020. 8. 7(금) 11:00 이후
- 2) 방법 : 합격여부는 학사팀에서 개별 SMS 발송 통보합니다.
  - ※ 재입학 가능 여부는 정원내·외 재입학 여석보다 재입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입학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 후 반드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사범대학, 의과대학, 치과대학, 약학대학은 반드시 학사팀에 연락하여 여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라. 재입학생 등록

- 1) 등록기간 중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한 후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 ※ 등록기간(재학생과 동일): 2020.8.24(월)~ 8.27(목)
- 2) 재입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됩니다.
- 3) 재입학생은 등록금 분납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4) 재입학 승인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 (질병, 입대 휴학 제외)
- 5) 재입학생은 해당 학과에 수강신청, 학점이수 및 학사제도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### 마.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

- 1) 수강신청(재학생과 동일) 죽전 : 1차 8.17(월), 2차 8.20(목) / 천안 : 1차 8.18(화), 2차 8.21(금)
- 2) 수강신청정정(재학생과 동일) 죽전/천안 : 9.7(월) ~ 9.8(화)